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952
----------	------

발의년월일 : 2009.

발 의 자 : 이민근 의원 외 7 인

제안이유

-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 시장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차보전 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율은 연 3%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 예산의 범위에서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연 1%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의 2).
-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중지 및 회수 조건을 규정함(안 제6조).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예산수반사항 :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신용보증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제비용을 말한다.

제3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협약에 의하여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 할 수 있다.

- ② 이차보전율은 연 3% 이내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이차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5조(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수수료는 연 1% 이내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6조(보증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회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2.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
3.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4.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제2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1952
----------	------

제안년월일 : 2010. 2. 26.
제안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이차보전율과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범위를 하향 조정하고 시행시기를 늦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이차보전율을 연2%이내 3년의 범위에서 지원함(안 제4조)
-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을 연1%이내 3년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로 함(안 제4조의2).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수정안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의 “연 3% 이내로 5년의 범위내에서”를 “연 2% 이내로 3년의 범위
에서”로 한다.

“제4조의2”를 “제5조”로 하고 제1항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
에서”로, 제2항 “5년의 범위 내에서”를 “3년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를 제6조, 제7조, 제8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이차보전)①(생략) ②이차보전율은 연 3% 이내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생략)</p> <p>제4조의2(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①시장은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한 신용보증수수료는 연 1%이내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생략)</p> <p>제5조(생략) 제6조(생략) 제7조(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4조(이차보전)①(원안과 같음) ② 연 2%이내로 3년의 범위에서 ③(원안과 같음)</p> <p>제5조(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①..... 예산의 범위에서 ②..... 3년의 범위에서 ③(원안과 같음)</p> <p>제6조(원안과 같음) 제7조(원안과 같음) 제8조(원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